

2015년 대학생 (신입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나. 공급물량 : 605호[3,000호 중 80%는 재학생 대상으로 기 공급]

지역	소계	기공급 (재학생 외)		금회공급 (신입생)		지역	소계	기공급 (재학생 외)		금회공급 (신입생)	
		단독	공동	수시	정시			단독	공동	수시	정시
서울	1,000	700	100	120	80	강원	100	70	10	12	8
인천	100	70	10	12	8	충북	100	70	10	12	8
경기	700	490	70	85	55	충남	160	112	16	20	12
부산	160	112	16	20	12	전북	105	75	10	12	8
대구	70	49	7	8	6	전남	30	20	3	4	3
광주	100	70	10	12	8	경북	130	91	13	16	10
대전	130	91	13	16	10	경남	100	70	10	12	8
울산	10	3	1	3	3	제주	5	2	1	1	1

- *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충남지역에 포함하여 물량 배정
- * 신입생 물량(20%)은 수시합격자와 정시합격자로 구분하여 각각 '14년 12월, '15년 2월 입주자 모집)
- * **금회공급시 '15년 신입생(정시·수시합격자)만 신청가능**

2. 신청자격 및 순위

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 8)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진학예정인 2015년 신입생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학생

■ **타 시·군 출신 인정기준**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 기존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소년소녀가정(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모두 없는 경우)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인 경우

■ **대학교 인정기준**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은 제외
-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14.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기준)”

나. 신청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차량기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지적 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1순위 자격 선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2순위 자격 선정 대상

□ “소득” 산정 대상(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토지, 자동차 등 자산 기준 포함)

-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 ▷ 전년도(201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소득 100% 이하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소득 산정 항목(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입주대상자 확인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장애인” 인정 가구

-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었거나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었거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3. 신청절차 및 일정

가. 신청절차



나. 신청기간 :

- 수시합격자 '14.12.17(수) 10:00 ~ 12.19(금) 17:00 (3일간)
- 정시합격자 '15. 2.12(목) 10:00 ~ 2.13(금) 17:00 (2일간)

- ※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 마감일에는 신청접수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람
- ※ 신청 접수시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장시간 접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신청 마감시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단, 공사에서 인정하여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 한함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합격통지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시 첨부파일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라. 신청시 제출서류

- ※ **입주 신청시 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 파일당 최대 500Kbyte로 제한)**
- ※ **인터넷 신청내역 입력 오류 및 첨부자료 누락 또는 식별불가 등의 경우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이후 변경할 수 없고 탈락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첨부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4. 12. 8) 이후 발급분에 한함]		
첨 부 사 료	① 주민등록등본(본인)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 (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첨부) - 기존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본인 등본에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추가 첨부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반드시 신청인(대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부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님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말소자초본 등 추가 제출
	③ 합격통지서	-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출
④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본인)	- 배우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우에 한해 첨부	
⑤ 장애인등록증	- 2, 3순위 장애인 중 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가 지적·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첨부 *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⑥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첨부	
⑦ 아동복지시설 관련 서류	- 1순위 아동복지시설퇴소자에 한해 시설퇴소확인서 및 시설등록증 첨부	

마. 입주대상자 발표 : 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수시합격자 : '15. 1.16(금) 16:00, 정시합격자 : '15. 3. 9(월) 16:00

※ 본부별 공급물량의 1배수 내외를 입주대상자로 발표하고, 입주대상자의 병역, 취업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1배수 초과 2~3배수를 예비자로 관리

※ 예비자는 추후 지역별로 LH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 상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안내하며, 선순위 입주대상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 현황 등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SMS, e-mail, 홈페이지 게시 등)하고 **소명기한 부여**

※ 확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주택물색 가능**

4.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 단독거주 신청의 경우 : 동일 순위자 경쟁시 순위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구분	선정기준						
1순위	경쟁시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별 배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평가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td> <td>3점</td> </tr> <tr> <td>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td> <td>3점 2점 1점</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3순위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항목별 배점표]						

구분	선정기준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2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50% 이하)			3점 1점
	③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 소득기준 금액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70% 이하	3,224,350원	3,571,960원	3,750,210원
	소득 100% 이하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소득 120% 이하	5,527,450원	6,123,360원	6,428,930원
	소득 150% 이하	6,909,320원	7,654,200원	8,036,160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기타 소득 산정 항목 등은 "2순위 자격 선정 대상" 중 소득 설명 항목 참조			
	■ 가정항목(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소득 선정 대상)별 가정부여 대상자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5.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가.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인천 제외, 세종 포함)	기타 도(道)지역
75백만원/호	55백만원/호	45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 이내로 제한함

나.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 예)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주택을 계약한 경우(1순위)
- 본인부담 보증금 : 340만원(기본 100만원 + 1년치 월임대료 240만원)

* 단, 입주자가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년치 월임대료 부족분만 추가 부담

6. 임대조건

가. 임대조건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순위 2순위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2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나.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 전세금 7,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 - 100만원) × 2% ÷ 12] = 123,330원

※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7,500만원 - 200만원) × 3% ÷ 12] = 182,5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7.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8. 입주자격 확인방법

가.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며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여부
- 가점항목 : 무주택 여부, 소득 확인

다. 자격확인 및 배점확인 불가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및 배점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등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소명기한을 부여하고, 소명서류제출 기한내 해당 서류를 LH 홈페이지에 등록 또는 직접 제출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람

9. 신청 부적격자

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대학생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한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이 제외

나.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주)**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 신청 관련 안내

- 금회 모집시 `15년 신입생(수시합격자, 정시합격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시 입력한 입주자격 및 가점으로 입주대상자와 예비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예비자에 한해 자격 검색(“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와 예비자를 선정
 - ※ 인터넷 신청내역 입력 오류 및 첨부자료 누락 또는 식별불가 등의 경우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이후 변경할 수 없고 탈락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 신청방법 및 첨부파일 조정, 개인 pc 환경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기 바람
 - 방화벽 등으로 인해 첨부기능 등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 사업대상지역내에서 1가구의 2인 이상 대학생(형제자매의 경우)은 전세 임대주택 각각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입주 이전 자퇴, 입학포기시 지원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시까지 학적을 유지**하여야 함

나. 주택물색 관련 안내

- 대학 소재 시·도내 지역에 한해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공급물량은 ‘충남’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종시’에 소재한 주택에 한해 지원(지원한도 55백만원)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지역 내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 지원 가능
 -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하고,

입주시 선지급한 계약금 중 본인부담금(100~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LH에서 대학생에게 계좌입금하며, 잔금은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함(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증액(추가),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불가

- 병역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 지역본부와 협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 계약도중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라. 기타

-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때에는 주택을 계속 공급(단, 복학 및 병역필 증명)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신청인과 배우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15년 대학생 전세임대 관련 Q&A 참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을 준용
 - 향후 기타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11. 입주신청 이후 제출서류

- 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출 (입주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 당첨 취소될 수 있음)

나. 기타 추가 제출

- 입주신청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출 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12.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구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http://jeonse.lh.or.kr)

13. LH 지역본부 연락처(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본부 주거복지부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02)3416-3506 3586
경기본부 주거복지부	경기남부(과천, 광명,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시흥, 평택, 화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031)250-3933 3965 6184
인천본부 주거복지부	인천 경기 서부(김포, 부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032)890-5470 5460
부산울산본부 주거복지부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051)460-5415-8
대구경북본부 주거복지부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053)603-2702, 2720-2723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부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360-3221, 3266
대전충남본부 주거복지부	대전, 세종,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042)470-0804, 0843, 0816
강원본부 주거복지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033)258-4131, 4127 (춘천, 강릉권) 033)760-6300, 6246 (원주권)
충북본부 주거복지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043)290-3263, 3264
전북본부 주거복지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58	063)230-6182, 6222
경남본부 주거복지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055)210-8495, 8494 8474, 8475 8458, 8662
제주본부 주거복지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064)720-1034, 1036

함께 만들어요. clean LH 

부조리신고센터 Tel. 031-738-7150, 7162 <http://clean.LH.or.kr>

2014. 12. 8.